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◇ 제 · 개정 이유

불필요한 조문 삭제 · 문구(자구)수정 반영 및 각 조항의 관련 근거를 바르게 정비하여 합리적 당직제도 운영

◇ 주요내용

가. 제10조(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)에서 근무상의 공무(公務)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(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)을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(재택당직근무처)으로 공무(公務) 한자 삭제 및 문구(자구) 수정

나.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중 복장 및 당직근무표찰 패용 관련 불필요한 조항 삭제

다. 제23조(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·보완)에서 각 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,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, 제8조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제7조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로 문구(자구)수정 및 관련 근거 조문체계(조·항) 바르게 수정

라. 해당 규정 시행일에 대한 부칙 신설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- 마. 제2조(재택당직)에서 소속기관을 각 기관으로, 원장을 국립종자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로 문구(자구) 수정
- 바. 제3조(재택당직명령 및 변경)에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을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당직명령자로부터, 승인을 얻어야를 승인을 받아야로 문구(자구) 수정
- 사. 제4조(재택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인수)에서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자로, 재택당직 휴대전화를 재택당직 이동전화로, 전일근무자와 당일근무자간을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로 문구(자구) 수정
- 아. 제6조(재택당직근무 시간)에서 제②항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를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로, 제④항 삭제 및 제8조(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)에서 제②항제2호의 재택당직근무자는 제①항에서 제①항 문구(자구) 삭제
- 자. 제9조(보안점검)에서 최종퇴청자를 최종 퇴청자로 띄어쓰기, 제10조(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) 및 제12조(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)에서 당직자 및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자 및 재택당직근무로,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자로, 제15조(발령 및 해제)에서 국립종자원장을 원장으로 문구(자구) 수정
- 차. 제17조(비상연락체계)에서 당직자를 재택당직근무자로 문구(자구)수정 및 제16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바르게 조문체계(조·항) 정비
- 카. 제18조(비상소집)에서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자로 문구(자구)수정 및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, 제18조를 제17조로 바르게 조문체계(조·항) 정비
- 타. 제19조(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)에서 지체 없이 재택당직근무를 지체 없이 재택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로 자구(문구) 수정
- 파. 제23조(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·보완)에서 제21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붙여쓰기, 월1회를 월 1회로 띄어쓰기,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직원비상소집명부로 문구(자구) 수정